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4월 11일
- 회부일자 : 2005년 4월 12일

3. 제안이유

- 위험물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4조의 지정 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제5조제2항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의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39조의 제6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 동법시행령 제4조 별표2제7호 라목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한 저장·취급기준을 정함(안 제2조)
- 소량위험물의 정의 및 저장 또는 취급 공통기준을 정함(안 제3조)
- 소량위험물 저장소별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내지 제9조)
-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규정을 정함(안 제10조)

-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임시저장 또는 취급 장소의 시설기준 등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위험물의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기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를 정함(안 제14조)
- 조례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및 금액을 정함(안 제16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검토한 바
- 그간의 모법인 소방법이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모법으로 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선의의 위반자를 구제하기 위한 과태료 경감 조항은 도민의 입장을 고려한 현명한 규정이라 판단되나
- 제1조 목적이 소방기본법령 조항만 나열되어 있어 도민들이 본조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 폐지되는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중 제2장“화재의 예방”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 없이 폐지하여도 이후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있었는지와

-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성 확보,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설정 배경에 대하여 어느정도 고려가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